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미용사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94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79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8.

(3) 회 부 일 : 2025. 7.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¹⁾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1)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2024년 현재, 영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소 중 이용업은 15,374개소, 미용업은 186,935개소로, 최근 ‘K-뷰티’ 확산²⁾으로 국내 이·미용 산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도 지적되는바, 개정안은 이·미용사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미용사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미용 영업소별 세부 현황 >

(‘24.12월말 기준, 서울행정시스템)

영업소 현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이용업(총계)		15,374	15,706	16,118	16,443	16,442
미용업(합계, A+B+C+D)		186,935	180,212	172,708	164,131	153,356
일반	소계(A)	127,227	124,081	121,254	118,092	112,812
	종합(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31,177	30,080	29,200	28,637	27,827
	일반	89,066	87,398	85,973	83,787	79,900
	일반, 피부	1,114	1,005	882	789	678
	일반, 네일	1,187	1,234	1,256	1,292	1,328
	일반, 화장·분장	2,161	2,058	1,976	1,863	1,646
	일반, 피부미용업, 네일	231	229	197	197	189
	일반, 피부미용업, 화장·분장	459	407	332	273	207
	일반, 네일, 화장·분장	1,832	1,670	1,438	1,254	1,037
	소계(B)	33,575	32,113	30,103	27,571	25,191
피부	피부	25,923	24,848	23,441	21,738	20,176
	피부, 네일	3,040	3,059	2,952	2,770	2,617
	피부, 화장·분장 미용	2,585	2,297	1,924	1,519	1,144
	피부, 네일, 화장·분장	2,027	1,909	1,786	1,544	1,254

2) 2024년 방한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한국 방문 중 뷰티/미용 관광 참여가 2023년 10%에서 2024년 12.7%로 증가하였고, 참여 활동별 만족도 항목에서 뷰티/미용 만족도는 2023년 92.1%, 2024년 94.9%로 나타난 바 있고(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외래관광객 조사 보고서」),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K-뷰티 엑스포 코리아’(박람회) 행사도 개최된 바 있음.

소계(C)		20,663	19,358	17,625	15,644	13,237
네일	네일	17,171	16,088	14,690	13,058	11,034
	네일, 화장·분장	3,492	3,270	2,935	2,586	2,203
소계(D)		5,470	4,660	3,726	2,824	2,116
화장·분장		5,470	4,660	3,726	2,824	2,116

자료: 보건복지부

< 이·미용사 면허 취득자 현황 >

(‘24.12월말 기준, 서울행정시스템)

구분	이용사	미용사			
		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면허 취득자 수(명)	77,362	561,015	538,755	557,431	535,073

* 중복 면허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협회 회원 현황 >

(‘25.8월말 기준, 협회 제공)

협회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원수 (명)	17,000	60,938	10,750	26,000	1,151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현행법(제17조³⁾)에 따라 이·미용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바, 업무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러한 위생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는 있겠고, 직무교육 실시 주기도 규정되어야 하겠음.

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개요 >

- (대상) 공중위생영업자 / (시간) 매년 3시간
- (목적·내용)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정부시책, 관계 법령, 소양·기술 등 교육
- (운영) 위생교육은 현재 9개 영업자단체*에서 실시 중(보건복지부 고시)
 - * 숙박, 목욕, 이용, 미용(일반, 네일, 피부, 메이크업), 세탁, 건물위생관리
 - ** 교육 내용, 강사, 교육 장소, 수강료(3~4만원 수준) 등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규정

< 위생교육 실시단체 지정 근거 >

- 「공중위생법」 제17조제4항① 및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②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생교육 실시 가능
 - ②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
-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2006.8.1. 시행)
 - 숙박업·목욕장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법 제2조에 따른 9개 영업자

- (시행방법 및 절차) ①집합교육, ②우편교육('08년~), ③온라인교육('11년~)
 - * (우편교육) 도서벽지지역 영업자에 대해 '08년부터 시행
 - (온라인교육) '11년 이용·숙박업 시범사업 이후 단계적 확대, '22년부터 의무화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절차 등을 '위생교육 실시지침'으로 규정
- (위반 시 제재조치) 과태료 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 아울러, 직무교육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교육 이수자의 직접 당사자인 개별 이·미용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겠음.
-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 분	의견 내용
보건복지부	•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에 공감 - 이·미용사의 역량 향상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및 산업 경쟁력 제고
경상남도	• 이·미용업의 영업자 이외 종사자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으며, 기술 습득 및 전문성 확보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 직무교육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소한의 의무 시행주기를 규정하고, 구체적 시기 및 세부 시행 내용을 하부 법령으로 위임 필요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 새로운 기술력 및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 의무화 필요

문 의 처

02)6788-5500